**한국 집행관제도의 현황과 과제**

李 在 奭 (大韓民國 法務法人 明渡 明渡硏究所長)

|  |
| --- |
| Ⅰ. 들어가며  Ⅱ. 집행관제도 개관  Ⅲ. 집행관의 주요 직무  Ⅳ. 부동산 인도집행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提言  Ⅴ. 집행관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  Ⅵ. 맺는 말 |

**Ⅰ. 들어가며**

민사집행관계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과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집행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3면적 법률관계이며, 민사집행의 주체는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은 소관 사항을 달리하는 ➀ 집행관, ➁ 집행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사법보좌관),[[1]](#footnote-1) ➂ 제1심법원,[[2]](#footnote-2) ➃ 그 밖의 집행기관으로 다원화되어 있다.[[3]](#footnote-3)

한국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footnote-4) 또한 민사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인 경우[[5]](#footnote-5)에는 ‘법원’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명예퇴직한 후에,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집행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명도라는 작은 로펌에서 명도·철거집행의 집행당사자를 위한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조언이나 조력 등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 집행관제도의 전체적인 모습과 집행관의 소관 사무를 개관하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접경험과 집행당사자로서의 간접경험을 살려 한국 집행관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管見을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Ⅱ. 집행관제도 개관**

1. **설치 근거**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는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집행관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원조직법 제55조 제3항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집행관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이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6]](#footnote-6)[[7]](#footnote-7) 위 법원조직법 제55조 제4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집행관수수료규칙’이 규율하고 있다.

**2. 임명, 정원과 임기**

가. 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집행관법 제3조). 각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의 별표(‘집행관 인원표’)가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집행관규칙 제2조 제1항).

집행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73호)를 근거로 內規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법원장은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와 법원장의 종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집행관을 임명하고 있다. 각 지방법원의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① 직급, ②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③ 총 재직기간, ④ 연령, ⑤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의 각 항목별로 소정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한편, 2019년부터 송달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하는 전문집행관인 ‘송달사무 집행관’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집행관규칙 제2조 제2항,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등). 송달사무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장이 별도의 배점기준에 따른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와 법원장의 종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명하고 있다. 송달사무 집행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➀ 총 재직기간, ➁ 연령, ➂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의 각 항목별로 소정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나. 정원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집행관법 제4조 제1항),[[8]](#footnote-8) 각 지방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인 집행관규칙의 별표(‘집행관 인원표’)가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집행관규칙 제2조 제1항 본문).[[9]](#footnote-9)

2024. 2. 1. 현재 위 ‘집행관 인원표’에 따라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본원과 그 산하의 42개 지원에 450명의 집행관이 배치되어 있다. 총 인원 450명 중에서 여성은 15명이며, 송달전문 집행관은 32명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 | | 일 본 | | |
| 총인원 | 여성 | 송달전문 | 총인원 | 여성 | 송달전문 |
| 2011년 | 347 | 미확인 | 0 | 530 | 0 | 0 |
| 2012년 | 미확인 | 504 |
| 2013년 | 378 | 37 | 480 |
| 2014년 | 36 | 443 |
| 2015년 | 432 | 35 | 400 |
| 2016년 | 36 | 370 |
| 2017년 | 25 | 338 |
| 2018년 | 18 | 318 |
| 2019년 | 450 | 15 | 12 | 286 |
| 2020년 | 11 | 24 | 270 |
| 2021년 | 7 | 32 | 259 |
| 2022년 | 11 | 258 |
| 2023년 | 11 | 미확인 |
| 2024년 | 15 | 미확인 |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5개의 지방법원에 57명,[[10]](#footnote-10) ② 경기도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1개의 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16명, 그 산하의 2개 지원(고양지원·남양주지원)에 28명, ③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1개의 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본원에 33명, 그 산하의 1개 지원(부천지원)에 13명, ④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1개의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본원에 25명, 그 산하의 5개 지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에 49명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

다. 임기와 정년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집행관법 제4조 제2항).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집행관법 제4조 제3항).[[11]](#footnote-11) 집행관이 임기 중에 정년에 이르게 되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으로 당연히 퇴직한다.

**3. 신분, 교육, 감독과 징계**

가. 신분

대법원 행정예규 제270호는 집행관의 지위 내지 신분에 관하여, ‘집행관법 제2조[[12]](#footnote-12)가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서 법원,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국가의 강제집행권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사법기관)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와 그 밖의 겸직제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의 적용을 받으며(행정예규 270호), 집행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13]](#footnote-13)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14]](#footnote-14)

집행관법은 집행관이 일정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척; 집행관법 제13조), 기피나 회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집행관법 제18조). 집행관은 집행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집행관규칙 제27조 제1항), 이 교육과정을 집행관신규과정이라고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① 집행관신규과정(2024년의 경우 6. 12. ~ 6. 14. 및 12. 11. ~ 13. 13.), ② 집행관실무과정(2024년의 경우 7. 10. ~ 7. 12.), ③ 집행관연찬과정(2024년의 경우 12. 4. ~ 12. 6.)의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집행관연찬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그 논의 결과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매년 ‘집행관연찬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다. 감독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집행관법 제7조 제1항).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제7조 제2항).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집행관법 제7조 제3항).

집행관 감독관은 소속 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집행관규칙 제6조 제1항). 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집행관규칙 제6조 제2항), 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고(집행관규칙 제6조 제3항), 그 감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집행관규칙 제6조 제4항).

라. 징계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① 집행관법과 집행관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③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집행관법 제23조 제1항).

징계에는 ① 견책, ②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④ 면직이 있다(집행관법 제23조 제2항). 징계처분에 감봉 처분은 없다.[[15]](#footnote-15)

**4. 전문집행관제도의 도입**

집행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전문집행관)[[16]](#footnote-16)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집행관규칙 제2조 제2항). 전문집행관은 특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집행관일 뿐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임명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집행관은 아니다.[[17]](#footnote-17)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73호)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9. 7. 1.자로 송달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집행관(송달전문 집행관)[[18]](#footnote-18) 12명을 최초로 임명하였는데, 2024. 2. 1. 현재 32명의 송달전문 집행관이 일부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5. 전국법원 집행관연합회**

집행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집행관 업무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임의단체로서 ‘전국법원 집행관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다.[[19]](#footnote-19)

이 연합회에서는 업무처리기준(안)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6. 집행관사무소의 운영**

가.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집행관법 제8조 제1항).

특정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은 하나의 집행관사무소를 구성하며, 특정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 전원은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집행관규칙 제20조 제2항).

이와 같이 구성되는 집행관사무소는 ‘대표집행관’(집행관법 제8조)과 ‘집행관사무소 규약’(집행관규칙 제20조)을 양대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대표집행관

집행관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집행관법 제8조 제2항).[[20]](#footnote-20) 대표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집행관법 제8조 제4항).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집행관규칙 제3조, 제25조),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채용권, 사무분장권, 평정권 및 징계권 등을 가지며(집행관규칙 제21조, 제23조, 24조), 수수료 및 집행비용 등 예납금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의 취급점을 지정하여야 한다{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2114호) 제6조 제2항}.

그 밖에도 대표집행관은 해당 사무소에 접수되는 집행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관리․감독책임과 보고의무 등이 있다.

다. 집행관사무소 규약

집행관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규범인 규약(집행관사무소 규약)으로 정한다. 집행관사무소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집행관규칙 제20조 제1항).

집행관사무소 규약에는 ‘① 명칭 및 소재지, ② 구성원에 관한 사항, ③ 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④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⑤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⑥ 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⑦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집행관규칙 제20조 제3항).

다만, 대표집행관을 제외한 총무집행관, 간사집행관, 연구집행관 등의 임원에 관한 사항(위 ‘③’)은 사무소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행관합동사무소의 경우 수입의 분배에 관한 사항(위 ‘⑤’)을 일부 사무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7. 집행관사무원**

집행관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집행관법 제8조 제3항, 집행관규칙 제21조 제1항),[[21]](#footnote-21) 집행관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집행관법 제8조 제4항).

사무원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사무원의 임기는 4년이고 정년은 60세이며,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채용될 수 있다(집행관규칙 제21조 제5항).

사무원의 지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채용된 특수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관의 직무 중 ‘부수적 사무’를 처리하거나 집행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본질적 사무’를 대신할 수 없고 집행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22]](#footnote-22)

신규채용 또는 재채용된 사무원은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집행관규칙 제27조 제2항).[[23]](#footnote-23)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집행관규칙 제22조 제1항). 사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집행관규칙 제25조 및 제3조).

집행관의 직무는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을 보조하는 사무원의 법적 지위, 직무 법위 및 교육 등을 법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4]](#footnote-24)

**8. 수입과 그 분배**

가. 수수료와 비용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당사자)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법원·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와 비용[[25]](#footnote-25)을 받는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한 사무(의무적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만 받을 수 있을 뿐 수수료는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제6조 및 제20조 본문). 예외적으로 의무적 사무 중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수수료와 비용을 받는다(집행관법 제20조 단서).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집행관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정하여져 있고, 비용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나. 수입의 분배

집행관의 수수료는 ① 부동산 매각 수수료, ② 부동산 현황조사 수수료, ③ 강제집행(유체동산집행, 부동산 인도·철거집행, 가처분집행 등) 수수료, ④ 송달 수수료로 대별할 수 있다.

각 집행관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매월 그 사무소의 수수료의 총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속 집행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수료의 총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집행관의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집행관사무소별로 집행관의 수입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법원이 집행관규칙 별표(‘집행관 인원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26]](#footnote-26)

**9. 집행관 통합시스템**

대법원은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 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예규)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日本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해당하는 기관) 전산정보국이 ‘집행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집행관은 집행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관리, 사건처리, 예납금 등의 회계관리, 정보조회 등 집행관의 직무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강제집행에 관한 조서의 작성, 현황조사 보고, 송달결과 보고 등의 업무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집행관사무소의 각 집행관이나 집행관사무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핸드폰)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도 상당히 많다.

‘집행관 통합시스템’은 ‘집행관 관리감독시스템’과 ‘전자소송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원 외부의 ‘은행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다.

**Ⅲ. 집행관의 주요 직무**

1. **집행관 직무의 유형**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법은 집행관의 직무 내지 사무를 당사자의 위임에 의한 사무(집행관법 제5조)[[27]](#footnote-27)와 법령 또는 법원·검사의 명령에 의한 사무(집행관법 제6조)[[28]](#footnote-28)로 구분하고 있다.

|  |  |
| --- | --- |
| 민사집행에 관한 사무 | 당사자의 위임(집행신청)에 의한 사무 |
|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의한 사무 |
| 집행법원의 임명에 의한 사무 |
| 특별법상의 사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무 |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벌금 등 재판의 집행) |
| 그 밖의 주요 사무 | 송달사무 |
| 거절증서의 작성사무 |

법원행정처가 2004년 발간한 ‘집행관 실무편람’은 집행관의 직무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사무의 성질을 중심으로 ① 민사집행에 관한 사무, ② 특별법상의 사무, ③ 그 밖의 주요 사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집행관의 민사집행에 관한 사무는 ㉮ 당사자의 위임(집행신청)에 의한 사무, ㉯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의한 사무, ㉰ 집행법원의 임명에 의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29]](#footnote-29)

여기서는 집행관 사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당사자의 위임(집행신청)에 의한 사무, ㉯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의한 사무 중 대표적인 사무와 송달사무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 |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경매**  ② 동산으로 취급되는 재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③ 동산에 대한 ‘동산담보권’실행 |
| 일정한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① 추심하기 곤란한 재산권의 현금화  ②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점유)  ③ 유체물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유체물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 | ① 유체동산의 인도집행  ② **유아(幼兒)의 인도집행**  ③ **부동산·선박의 인도집행** |
| 각종 인도명령·집행명령의 집행 | ①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  ② 매각목적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관 보관명령의 집행  ③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에 있어 선박국적증서·항공기등록증명서 인도명령의 집행  ④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에 있어 인도명령의 집행  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압류물 인도명령의 집행 |
| 대체집행의 작위실시 | ① 건물의 철거집행  ② 수목의 수거집행 |
|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 ①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집행  ③ 각종 단행가처분의 집행 |

**[당사자의 위임(집행신청)에 의한 사무]**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의한 사무]**

|  |
| --- |
| ① **경매 부동산․선박의 매각실시**  ② 경매․강제관리 **부동산․선박에 대한 현황조사**  ③ 미등기 경매 건물에 대한 조사  ④ 경매 선박․항공기의 선박국적증서․항공기등록증명서의 수취․제출명령에 다른 사무  ⑤ 경매 자동차의 이동명령․인계명령에 따른 사무 |

|  |
| --- |
| ① 부동산 강제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으로의 임명에 따른 사무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관리명령의 관리인으로의 임명에 따른 사무  ③ 부동산 가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수익권강제관리의 관리인으로의 임명에 따른 사무  ④ 선박 경매에 있어서 감수보존명령의 감수보존인으로의 임명에 따른 사무 등 |

**[집행법원의 임명에 의한 사무]**

**2. 유체동산집행**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강제경매)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압류 → 매각 → 환가 →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내지 제222조 및 제271조).

유체동산 매각의 공고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www.courtauction.go.kr)[[30]](#footnote-30)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체동산집행의 신청 건수는 아래와 같다.[[31]](#footnote-31)

|  |  |  |
| --- | --- | --- |
|  | 한 국 | 일 본 |
| 2012년 | 142,489 | 35,292 |
| 2013년 | 140,150 | 25,375 |
| 2014년 | 120,985 | 23,841 |
| 2015년 | 112,867 | 25,256 |
| 2016년 | 103,429 | 25,356 |
| 2017년 | 95,162 | 24,507 |
| 2018년 | 95,078 | 20,337 |
| 2019년 | 90,407 | 18,502 |
| 2020년 | 76,963 | 13,868 |
| 2021년 | 68,394 | 13,642 |
| 2022년 | 미확인 | 미확인 |
| 2023년 | 미확인 | 미확인 |

**3. 유아 인도집행**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幼兒)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직접강제가 허용되고 있다.

가. 가사소송법의 규정 : 간접강제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유아(幼兒)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67조는 그 이행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 제2호는 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일종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인도의 대상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32]](#footnote-32)

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간접강제의 원칙과 직접강제의 예외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직접강제도 가능하다.   
 다만, 유아에 대한 인도청구권 집행을 위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유아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우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하고,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직접강제가 허용되고 있다.[[33]](#footnote-33)

다.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양 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병존 (직접강제 불가능)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자녀)의 경우에는 그 유아(자녀)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재특 82-1).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자녀)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채무의 집행(간접강제)만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의사능력 있는 유아(자녀)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무자 외에 유아(자녀)의 협력을 요하므로 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채무로서 간접강제도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유아(자녀) 인수를 방해하지 않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아(자녀)가 협력을 거부할 경우에만 간접강제가 배제된다.[[34]](#footnote-34)

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의 제정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청구기각 사유로 규정하여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2024. 1. 1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를 제정하였다. 이 예규는 2024. 4.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이 예규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

4. 부동산 인도집행

집행관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서 한국 민사집행법은 인도최고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2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 인도할 것을 최고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최고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도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점유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사비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점유자를 변경(교체·추가)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점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권의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는데,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관법 제17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집행관의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른바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워 원조요청에 응하여 출동은 하되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채무자가 조직적·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인력(통상 ‘경비노무자’라고 한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저항의 규모나 강도에 비례하여 채무자는 상당한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경찰원조의 형해화와 그로 인한 불완전한 국가구제(강제집행)에 따른 폐해 역시 매우 심각하다.

대법원은 재판예규 제1773호(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지침)를 제정하여, 집행관은 부동산·동산 인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그 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2021. 4. 1. 시행).

부동산 인도집행의 신청 건수는 아래와 같다.[[35]](#footnote-35)

|  |  |  |
| --- | --- | --- |
|  | 한 국 | 일 본 |
| 2012년 | 34,500 | 25,354 |
| 2013년 | 37,760 | 24,554 |
| 2014년 | 36,947 | 22,878 |
| 2015년 | 29,509 | 22,020 |
| 2016년 | 21,741 | 21,866 |
| 2017년 | 16,595 | 22,749 |
| 2018년 | 16,053 | 22,922 |
| 2019년 | 17,345 | 23,712 |
| 2020년 | 18,289 | 23,344 |
| 2021년 | 16,987 | 24,036 |
| 2022년 | 미확인 | 미확인 |
| 2023년 | 미확인 | 미확인 |

**5. 부동산 현황조사**

집행관은 법원의 현황조사명령(민사집행법 제85조 등)에 따라 현황조사를 한다.

부동산 현황조사 건수는 아래와 같다.[[36]](#footnote-36)

|  |  |  |
| --- | --- | --- |
|  | 한 국 | 일 본 |
| 2012년 | 91,774 | 38,682 |
| 2013년 | 92,107 | 33,514 |
| 2014년 | 78,683 | 27,675 |
| 2015년 | 67,316 | 25,269 |
| 2016년 | 60,586 | 23,124 |
| 2017년 | 57,804 | 21,423 |
| 2018년 | 59,444 | 20,942 |
| 2019년 | 70,459 | 20,503 |
| 2020년 | 63,944 | 17,228 |
| 2021년 | 54,520 | 15,988 |
| 2022년 | 54,258 | 미확인 |
| 2023년 | 70,795 | 미확인 |

**6. 부동산 매각**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간입찰, 기일입찰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현재 모든 법원에서는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부동산 매각 건수는 아래와 같다.[[37]](#footnote-37)

|  |  |  |
| --- | --- | --- |
|  | 한 국 | 일 본 |
| 2012년 | 118,015 | 51,858 |
| 2013년 | 119,166 | 42,366 |
| 2014년 | 105,571 | 34,723 |
| 2015년 | 96,395 | 30,496 |
| 2016년 | 87,249 | 27,301 |
| 2017년 | 85,764 | 24,316 |
| 2018년 | 90,927 | 23,385 |
| 2019년 | 104,417 | 22,903 |
| 2020년 | 92,781 | 20,839 |
| 2021년 | 78,883 | 18,287 |
| 2022년 | 77,459 | 미확인 |
| 2023년 | 101,147 | 미확인 |

**7. 집행관송달**

소장 등 서류의 송달 실시는 ① 우편 또는 ② 집행관에 의하거나, ③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6조). 따라서 원칙적인 송달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민사소송규칙 제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 또는 법원사무관등(민사소송법 제177조)이나 법원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38]](#footnote-38)가 송달실시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로부터 송달수수료 등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을 예납 받아야 한다(집행관법 제19조 제1항).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한다.

실무에서는 우편(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행관에 의한 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송달 건수는 아래와 같다.[[39]](#footnote-39)

|  |  |  |
| --- | --- | --- |
|  | 한 국 | 일 본 |
| 2012년 | 820,560 | 3,032 |
| 2013년 | 891,452 | 2,676 |
| 2014년 | 904,556 | 2,252 |
| 2015년 | 921,843 | 2,391 |
| 2016년 | 1,126,844 | 2,190 |
| 2017년 | 1,239,812 | 2,299 |
| 2018년 | 1,164,952 | 2,207 |
| 2019년 | 1,146,992 | 1,904 |
| 2020년 | 1,111,130 | 1,895 |
| 2021년 | 1,104,513 | 1,660 |
| 2022년 | 1,414,997 | 미확인 |
| 2023년 | 1,594,858 | 미확인 |

**Ⅳ. 부동산 인도집행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提言**

수도권의 어느 집행관은 “저항은 송달을 할 때도 있고 유체동산집행을 할 때도 있지만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때가 가장 심하다.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의 저항 강도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40]](#footnote-40)

한국의 집행관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이다. 한국의 집행관제도와 부동산 인도집행 실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내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 **폭력적 저항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의 正立**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서 채무자 측이 조직적·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그러하다.

강제집행의 방해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이다. 채무자 등의 권리와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채무자 등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자로서 현행범체포 등의 대상이다.

이제는 언론도 정치인들도 온정주의적·포퓰리즘적 편향에서 탈피하여 강제집행의 방해가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일부 국민(채무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법당국도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학계도 해외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무이행 내지 권리실현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낮을수록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힘의 지배가 횡행하게 된다. ‘법과 원칙의 준수는 바보짓이고 법과 원칙의 무시가 상책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1. **‘법원 강제집행 현장 경찰조치 매뉴얼’의 개정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의 폐기)**

집행관이 경찰에 원조 요청을 하면 경찰은 형식적으로만 원조를 하고 있다. 일단 출동은 하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등의 활동만 하고 저항은 배제·제압하지 않는다.

경찰청이 작성·운용하고 있는 ‘법원 강제집행 현장 경찰조치 매뉴얼’은,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화 될 때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즉, 출동은 하되 저항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채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노무자를 고용하고, 집행관은 그 노무자를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보조자로 삼아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실무가 정착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구제의 모습이 아님은 물론이다.

경찰이 저항배제에 적극 나서왔다면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채권자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일이 없고, 법 경시, 떼법 만능의 풍조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이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빨리 형해화된 경찰원조를 정상화시켜 법치주의와 국가구제(강제집행)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의 경우처럼 민사집행의 경우에도 경찰이 저항을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즉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경찰 매뉴얼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 대해 집행권원의 실현에 조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조력을 거부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법원과 경찰청이 상호 협의하여 경찰원조에 관한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은 가처분·집행문, 인도최고에 관한 입법**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점유자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➀ 본안의 원고를 위한 채무자 불특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제도의 도입, ➁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위한 채무자 불특정 보전처분제도의 도입, ➂ 채무자 불특정 집행문제도의 도입, ➃ 인도최고의 명문화와 집행력의 확장·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민사보전법(2004. 4. 1. 시행)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4. 관련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부동산 인도집행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정비나 제도개선 등도 요청된다.

첫째, 강제집행 이전 단계에서 법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대처를 지양하여 문제나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해야 한다. 법만능주의 내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차의 안내와 배려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그 사업구역 내에서의 인도집행이 그만큼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제집행 단계에서 경찰원조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인권침해나 가혹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의 ‘Ⅲ. 4.’에서 살펴본 대법원은 재판예규 제1773호(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강제집행 이후 단계에서 채무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사회보장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관련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Ⅴ. 집행관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

집행관제도에 대하여는 임용방법의 폐쇄성과 고수익이 문제라는 지적 등이 있어 왔다.

현 상황에서 집행관이 수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반론하기는 궁색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관법을 개정할 것이 요망된다.

집행관을 시험으로 선발하고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집행관법 개정법률안이 2021년 발의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안도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출신의 공무원은 물론 집행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직역의 경력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Ⅵ. 맺는 말**

“민사집행법은 학문적 논의가 실무에 의하여 검증되고, 실무상 문제점이 학문적 검토에 의하여 feed-back되는, 학문과 실무가 융합된 분야이다. 이렇듯 중요한 민사집행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구자가 많지 않다. 민사소송법과 너무나 가까운데도 민사소송법학자 가운데 민사집행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드문 편이다. 당위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민사집행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다. 그러나 세태가 어찌 되었건 민사집행법은 의연히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을 자랑스럽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학자로서의 홍복(洪福)이다. 다만 이러한 학자의 즐거움은 깨어 있고, 깨치려는 치열한 구도(求道)의 자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긴장하면서 초심을 되새긴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는 것, 간절하게 묻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 글은 金弘燁 법무법인 法敎 대표변호사(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저술하신 민사집행법의 서문(제3판)의 일부이다. 민사집행 분야, 그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집행관제도와 집행관 소관 업무에 관한 실무자로서의 소회를 이 글로 갈음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한국 집행관제도의 실태, 과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자의 管見이, 일본과 한국의 학자와 실무자 제현께서 양국의 민사집행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

1. 집행법원의 사무는 본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법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2005. 3. 24.)으로 2005. 7. 1.부터 사법보좌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집행법원의 사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사법보좌관이 분담하게 되었다. [↑](#footnote-ref-1)
2. 판결법원인 제1심 수소법원도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금전채권 집행에 있어서 작위의무 등에 관한 대체집행(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과 부작위의무 등에 대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이다. [↑](#footnote-ref-2)
3. 이시윤, 제7개정판 신민사집행법, 박영사(2016), 50. [↑](#footnote-ref-3)
4. 日本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기관)는 “민사집행은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 또는 집행관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ootnote-ref-4)
5. 한국 민사집행법 제3조(집행법원) 제1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ootnote-ref-5)
6. 또한 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모든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행관규칙 제20조 제4항). [↑](#footnote-ref-6)
7. 日本의 법령에는 집행관의 보증금 납부제도와 상호 연대보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ootnote-ref-7)
8. 日本의 법령에는 집행관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footnote-ref-8)
9.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집행관규칙 제2조 제1항 단서). [↑](#footnote-ref-9)
10. 2024. 2. 1.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명,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0명,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1명,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1명, 서울서부지방법원에 9명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 위 각 지방법원의 산하에 지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footnote-ref-10)
11. 日本의 법령에는 집행관의 임기와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제3과 집행제도계 조사원 카와이 료(川井 亮)에 의하면, 일본의 집행관은 68세에 달하는 최초의 3월 31일에 사직을 하되, 최장 70세까지 재임용될 수 있다고 한다{川井 亮, “집행관에 관한 한일 비교”, 제23회 한·일등기관등상호연수 자료집, 법원공무원교육원(2023), 283}. 이하에서는 ‘川井 亮, “집행관에 관한 한일 비교”, 제23회 한·일등기관등상호연수 자료집, 법원공무원교육원(2023)’를 ‘川井 亮’라고 하기로 한다. [↑](#footnote-ref-11)
12. 한국 집행관법 제2조(직무)는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ootnote-ref-12)
13.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다326 판결. [↑](#footnote-ref-13)
1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footnote-ref-14)
15. 日本의 국가공무원(재판소직원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면직, 정직, 감급(減給), 계고의 처분이 있다(일본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裁判所職員臨時措置法 본칙 1호). 다만, 일본의 집행관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과태료 처분이 없으며, 減給 처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footnote-ref-15)
16. 집행관규칙에서는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전문집행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집행관’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일반적인 용례에 따르기로 한다. [↑](#footnote-ref-16)
17. 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3), 21면 참조. [↑](#footnote-ref-17)
18.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서도 ‘송달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에 대하여 ‘송달전문 집행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송달전문 집행관’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일반적인 용례에 따르기로 한다. [↑](#footnote-ref-18)
19. 日本의 ‘日本執行官連盟’과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footnote-ref-19)
20. 日本은 ‘總括執行官制度’를 두고 있다(일본 집행관규칙 제5조의2). [↑](#footnote-ref-20)
21. 일본은 집행관사무원을 통달(通達)에 근거하여 두고 있다고 한다{最高裁判所事務總局, 執行官提要[第6版], 法曹會(令和4年), 10}. [↑](#footnote-ref-21)
22. 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3), 37면 참조. [↑](#footnote-ref-22)
2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집행관사무원과정을 개설·운용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5. 1. ~ 5. 3. 및 11. 27. ~ 11. 29.로 예정되어 있다. [↑](#footnote-ref-23)
24. 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3), 43면 참조. [↑](#footnote-ref-24)
25. 집행관법 제19조 제1항과 제20조는 ‘집행관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체당금(替當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집행관이 지출한 비용’이라는 표현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3), 25면 참조}. [↑](#footnote-ref-25)
26. 日本은 1년간의 수수료 수입이 政令에서 정하는 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관이 그 부족액에 관하여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일본 재판소법 제62조 제4항, 일본 집행관법 제21조). 그러나 전국 집행관사무소의 부동산매각 수수료 중 50%를 전국의 모든 집행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수수료 수입이 政令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집행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제3과 집행제도계 조사원 川井 亮의 진술). [↑](#footnote-ref-26)
27. **집행관법 제5조(위임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

    2. 동산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footnote-ref-27)
28. **집행관법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footnote-ref-28)
29. 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23), 51~54 참조. [↑](#footnote-ref-29)
30.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에서는 부동산 매각공고, 동산 매각공고를 하고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등에 기하여 압류한 동산(유체동산집행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 또는 철거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통상 ‘목적 외 동산’이라고 한다)으로서 채무자에게 인도할 수 없어 보관한 것도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매각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footnote-ref-30)
31. 日本의 통계는 川井 亮 291면에서 인용하였다. [↑](#footnote-ref-31)
3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Ⅳ], 사법연수원(2020), 687. [↑](#footnote-ref-32)
3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Ⅳ], 사법연수원(2020), 687 참조. 대법원예규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는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 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ootnote-ref-33)
3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Ⅳ], 사법연수원(2020), 686~687. [↑](#footnote-ref-34)
35. 日本의 통계는 川井 亮 292면에서 인용하였다. [↑](#footnote-ref-35)
36. 日本의 통계는 川井 亮 294면에서 인용하였다. [↑](#footnote-ref-36)
37. 日本의 통계는 川井 亮 295면에서 인용하였다. [↑](#footnote-ref-37)
38.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률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footnote-ref-38)
39. 日本의 통계는 川井 亮 296면에서 인용하였다. 일본에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을 집행관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행관 송달 건수가 매우 적다고 한다(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제3과 집행제도계 조사원 川井 亮의 진술). [↑](#footnote-ref-39)
40. 나수경·김성화·서용성,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 39. [↑](#footnote-ref-40)